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

1	기	본	현	황
---	---	---	---	---

□ 사업개요

<u> </u>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
사업위치	서울시 전지역
총사업비	총 (국비) [시비] (보조율) [구비] 765,221,800천원 0 %
사업내용	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전출금
사업형태	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사업시행주체	서울시 도시활성화과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	V								
경상	투자								
V							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본부	도시활성화과	김승원 2133-4630	국종호 2133-4653	김천수 2133-4654

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	(x-)	(x-)
	685,097,000	727,762,700	765,221,800	37,459,100	5
기타회계전출금	(x-)	(x-)	(x-)	(x-)	(x-)
	685,097,000	727,762,700	765,221,800	37,459,100	5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		
기타회계전출금	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,093,174,000,000원*70%	=	765,221,800천원

3 사업설명

- □ 사업목적
 - 재산세(구 도시계획세)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(70%)
- □ 사업근거
 -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78조. 도시개발조례 제8조
- □ 사업내용
 - 규 모 :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70%
 - 사업기간 : 2016.1~2016.12
 - 사업내용 : 재산세(구 도시계획세)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(70%)
 - 총사업비 : 765,221,800천원
- □ 추진경위
- 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 -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
- □ 사업추진절차
 -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

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65,221,800	

도시개발 특별회계 법정전출금	2016.01~2016.12	765,221,800	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조치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3년도	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
2014년도	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
2015년도	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업비로 활용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2	(x-) 657,027,000	(x-) 0	(x-) 0		(x-) 657,027,000	(x-) 0	(x-) 0
2013	(x-) 692,939,100	(x-) 0	(x-) 0	(x-) 636,766,100	(x-) 636,766,100	(x-)	(x-) 0
2014	(x-) 685,097,000	(x-)	(x-) 0		(x-) 685,097,000	(x-) 0	(x-) 0